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종석 과장(2110-5101), 이재연 사무관(5108)		

디자인전문회사의 공공용역 진입장벽 낮아진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매출액 기준 완화 -

□ 공공 디자인용역 발주시 참여가능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들이 공공디자인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12.5(목)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하여,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한 기준을 종전「직전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힘

○ 당초 인력기준도 완화하여 디자인 전문기업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인력기준 완화시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매출액 기준만 완화하기로 결정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 고용규모('13.11월) : 15,681명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디자인용역 발주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참여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준완화를 통해 **디자인전문회사들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참고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재연 사무관(☎ 02-2110-51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일정한 전문인력 및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첨단 개발기법 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신고기준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산업디자인용역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들도 공공발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원(종합디자인분야는 6억원) 이상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1억원(종합디자인분야는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신고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30.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억원(다만, 제1호 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